

내집앞 내집포 앞 눈치우기는 우리의 미풍양속

성숙된 시민의식은 안전한국의 지름길!!!

“2006년 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 되었습니다.”(2006년 법 제정 운영)



■ 언제

-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~다음날 오전 11시까지

■ 어디

- 보도
 - ✓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
- 뒷길 및 보행자 전용도로
 - ✓ 당해 건물의 주 출입구 부분
 - ✓ 대지경계선 부터 1~1.5m 구간

